

美國의 對外腐敗防止法과 腐敗行爲의 國際的 規制

崔哲榮*

차 례

I. 서론

1. 미국부패방지법의 연혁
2. 미국부패방지법의 입법배경
3.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II. 역외적 부패방지법과 문화적 다양성

1. 뇌물에 대한 보편적 비난과 상대성
2. 역외적 부패방지법의 합법성논리
3. 역외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

III. 역외적용 법제와 국내법제에 있어 가치판단

1. 행위의 합법성 판단
2. 합법성 판단의 사례
3. 국내적 입법을 통한 부패방지의 효율성

IV. 국내적 부패방지법제의 국제적 조화

1.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국내적 부패방지법
2. 국제적 분쟁의 회피
3. 대외부패방지법의 다국적 성격
4. 국내법제를 통한 국제적 부패문제의 통제가능성

V. 결론

* 大邱大 法大 教授, 法學博士

I. 서론

1. 미국부패방지법의 연혁

1977년이래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일정한 자가¹⁾ 외국의 공무원에 대하여 賂物을 供與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범죄로 규율하고 있다.²⁾ 비록 통과된 이래 대외부패방지법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³⁾ 의회는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을⁴⁾ 통하여 법규의 모호성과 입법목적에 대한 일부 흠결을 제거하는 한편 당해 법규의 핵심적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외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함으로써 뇌물의 域外的 禁止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⁵⁾ 1998년 말에 국제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금지에 관한 OECD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뇌물의 정의, 외국공무원, 기타 동 협약의 의하여 규율받는 사람의 정의 등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미국 법무부는 국제뇌물금지 및 공정경쟁법(International Anti-Bribery and Fair Competition Act)을⁶⁾ 통하여 대외부패방지법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2001년 3월 20일에는 국제적인 돈세탁의 방지와 미국의 재정제도보호를 목적으로 국제돈세탁방지 및 대외부패방지법(International Counter-Money

1) 일정한 범주의 자들로는 증권발행인, 국내기업체들, 증권발행인 및 국내기업체의 직원, 임원, 대리인 및 주주들을 열거하고 있다: 1982년 15 U.S.C. §§78dd-1 내지 78dd-2.

2)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Public Law No. 95-213, 91 Stat.1494; 동 규정은 1982년 15 U.S.C. §§78dd-1 내지 78dd-2로 개정되었다.

3) 동법에 대한 비판은 첫째, 미국법과 외국법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미국법의 특정규정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동법의 입법목적이 가려질 수 있다는 점, 셋째, 동법은 국제적 관점이 아닌 미국적 관점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부패는 미국에 의해 배타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이루어 졌다: Philip M. Nichols, Extraterritorial Restrictions on Bribery,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99, p. 453, note, 15.

4) Pub. L. No. 100-418, §§5001-3, 102 Stat.1107(15 U.S.C. §§78dd-1 to dd-2).

5)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ndments of 1988, Public Law No. 100-418, §§5001-03, 102 Stat.1107, 1415-25; 15 U.S.C. §§78d 내지 78dd-2(1994).

6) Pub. L. 105-366, 112 Stat.3302(1998).

Laundering and Foreign Anticorruption Act of 2001)을⁷⁾ 입법함으로써 대외부패방지외 이에 관련된 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였다.

2. 미국부패방지법의 입법배경

부패는 사회의 도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시켜 올바른 국가경영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정의와 질서에 대한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켜 정치적 불신을 유발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⁸⁾ 국가체제의 근원적 해악이다.

따라서 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고양하고 국제사회의 信認度를 높이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과거 이란의 팔레비(Pahlavi)정권과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정권은 부패로 인하여 붕괴하였으며 이러한 정권의 붕괴과정에서 수많은 외국의 투자자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으며 국제평화에 대한 불안을 유발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외부패방지법과 유사한 법제를 세계 각국이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부패는 정치 및 경제에 부정적 역기능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세계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의 부패관련법제의 입법에 탄력을 주는 기초로 역할하고 있다.⁹⁾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각국 간에 광범위한 이질성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淸廉原則에 관한 합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법제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7) 107th Congress, H.R. 1114.; 동 법안의 Sec.101은 국제적인 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며 Sec. 301-302는 외국의 정부 및 지배관료에 대한 부패행위와 돈세탁행위에 대한 재정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8) 「국제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하뇌물제공행위방지에관한협약」 前文 참조.

9) 97년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주요선진국은 부패문제가 세계경제 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 하에 상대국 정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한다는 소위 부패라운드를 발표시켜 99년부터 全會員國이 법제화하여 실행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8호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하뇌물방지법」을 입법하였다.

3.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비록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이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일부 흠결을 보완해 왔지만 국내적 가치기준의 국제적 강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동법을 통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부패행위보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¹⁰⁾ 또한 현재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가장 완벽한 역외적 입법이라 할지라도 어느 국가인가에는 적절치 않은 낯선 일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다.¹¹⁾ 아직까지 세계의 각국은 지역적 가치, 규범, 신념 등에 있어 광범위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世界共通의 法制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는 외국에서의 뇌물제공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공동된 하나의 법제를 통해 금지하기 위한 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¹²⁾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위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논의는 한 국가의 대외부패방지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그 중심이 요약될 수 있다.¹³⁾ 이러한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는 간섭을 포함하는 역외적용법제의 속성으로 國際的 敵對性的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외적용규정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을 모방한 부패방지법제의 확대가 어떻게 세계적 조화에 대한 위협을 부당하게 강화하는가 하는 근거를 분석함으로써 역외적용부패방지법제의 국제적 위험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구조 속에 남겨져 있는 認容 가능한 금품제공행위와 뇌물 사이의 구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역외적용법제를 통하여 타국의 문화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뇌물을 금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국제적 협약을 통

10) Steven R. Salbu, Bribery in the Global Market : A Critical Analysis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Washington & Lee Law Review*, Vol. 54, 1997, p. 229.

11) Steven R. Salbu, Extraterritorial Restriction of Bribery : A Premature Evocation of the Normative Global Villag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1999, pp. 224~227.

12) *Ibid.*, p. 232.

13) *Ibid.*, p. 254.

하여 각 계약국이 실효성 있는 강력한 국내적 반부패법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국내적 이행방안과 국내입법인 부패방지법제에 역외적 효력을 부여하여 초국가적 법규범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각국의 자발적 국내적 이행입법이 한 국가의 역외적 입법으로 인한 국제적인 불화의 위험을 회피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역외적 부패방지법과 문화적 다양성

1. 뇌물에 대한 보편적 비난과 상대성

비록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에 대한 총론적인 경멸은 국경을 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여기에서 부패에 대한 '보편적인 경멸'의 존재를 표현하는 '總論的'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문화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에 대한 경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부패에 대한 사회의 경멸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 그저 그 사회 내에서 좀더 우세한 가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의도된 표현이다.¹⁴⁾ 사실 모든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멸적인 뇌물의 수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뇌물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모든 문화에서 우월적인 가치임은 분명하다. 분명히 일정한 형태의 뇌물에 대한 국내법상의 금지조치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 의해 입법되어 있다.¹⁵⁾ 따라서 부패가 사회구조 속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는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행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패행위에 대한 포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 내에 부패의 만연이 입증하는 것은 당해 국가에서는 확고하게 보호장치가 되어있

14) 부패문제에 대한 접근의 시각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Philip M. Nicholas는 新現實主義理論에 근거한 국제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의 국제법적 접근방법(Philip M. Nicholas, "Outlawing Transnational Bribery Throug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8, 1997, pp. 321~322)을 채택하고 Steven R. Salbu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조화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경제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의 국제법적 접근방법(Extraterritorial Restriction of Bribery: A Premature Evocation of the Normative Global Villag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1999, pp. 224~227)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다른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호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상호보완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비교·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서방 선진국들은 물론 예멘,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중국 등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국가들도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

는 좋지 않은 거래시스템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사회의 틀 속에서는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과 함께 부패시스템에 대한 무감각 및 부패에의 참여가 동시에 존재한다.

사실 모든 문화가 부패를 회피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행위가 부패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 만큼 부패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變異와 부패의 문화적 구조론에 대한 거부가 존재한다.¹⁷⁾ 따라서 부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점과 부패를 구성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동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¹⁸⁾ 그러나 어느 국가도 공무원에게 상호적 대가성이 있는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의 매우 광범위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뇌물과 代價性의 획일적인 개념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다.¹⁹⁾

더욱이 특정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관한 가치판단은 그 정도에 있어 매우 다양하며 지구상에는 서로 容認할 수 없는 많은 규범, 가치 그리고 신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측면에서 하나의 지구촌 사회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역외적 부패방지법의 합법성논리

역외적 부패방지법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이 당해 법제가 가지고 있는 受容的 防禦(affirmative defense) 논리를 통하여 문

16) 이러한 보호적 부패구조는 뇌물을 공여받는 자의 탐욕보다는 가난 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Steven R. Salbu, "The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as a Threat to Global Harmony,"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99, p. 423, note 26.

17) Robert S. Leiken, "Controlling the Global Corruption Epidemic," *Foreign Policy*, Winter, 1996, p. 60.

18) David A. Gantz,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Professional and Ethical Challenges for Lawyers,"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4, 1997, p. 102, note 28.

19)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에 있어서 代價性의 概念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가 상이한 세계 각국에 대하여 수렴된 대가성의 개념을 동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고액의 뇌물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극형에 처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경우 역대 임금이라든가 소위 '떡값'에 대하여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임창렬 경기지사의 경기는 행정처자금수수, 백남치 전의원의 동아건설자금수수,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관련한 린다 김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뇌물인지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바 있다.

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만약 특정한 행위가 “당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면²⁰⁾ 당해 행위는 대외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고 하여 문화적 제국주의주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있다.²¹⁾ 부패방지법의 규정이 모든 상황에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비난은 그 근거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합법성에 근거한 수용적 방어는 법규정에 의한 역지가 포함된 것이다. 수용적 방어논리는 금품의 수수가 ‘成文法規’에 의하여 합법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문법규라는 제한은 수용적 방어를 오로지 행위지 국가의 제정법에 의하여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미국의 부패방지법에 의한 제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논점에서 보면 합법성의 규정을 통한 수용적 방어는 성문법규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위 외에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위지 국가에서 합법인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²³⁾

하지만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의 수수와 다른 국가에서의 ‘수용가능한’ 금품의 수수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는 성문법규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국가에서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용여부는 당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명문의 법규정에 의한 합법성 방어논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수단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과 같은 역외적 유형의 법제는 한 국가의 道德性 基準을 타국에 輸出하는 것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²⁴⁾ 더욱이 이러한 해결방법은 수용적 방어수단이 그 면제의 범위 내에 지역적으로 허용되는 현실적 부패구조를 포함할 수 있도

20) 15 U.S.C. §§78dd-1(c), 78dd-2(c).

21) Philip M. Nicholas, “Owrlawing Transnational Bribery Throug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8, p. 365.

22) Steven R. Salbu, *supra note 16*, p. 425.

23) Philip M. Nichols, “Regulation Transnational Bribery in Times of Globalization and Fragmentation,”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1999, p. 288.

24) 이는 미국의 기업인들이 해외에서도 미국의 대외부패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도덕성을 수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Lisa Harriman Randell, “Multilateralization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Vol. 6, 1997, p. 673; Steven R. Salbu, *supra note 16*, p. 425에서 재인용.

록 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3. 역외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은 모든 경우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지 국가의 법규에 그 위법성판단을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관행이 외국의 성문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어진 경우에 미국의 법률에서도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수용적 방어논리에 의한 해결방법이 이론적 호소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 세계에 있어서 도덕적 제국주의라는 혐의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합법성의 수용적 방어가 행위지 국가의 성문법규에 의한 합법성을 요건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부패방지법의 立法根據를 강화하는 경우 미국은 어떤 부패사건을 다루면서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부패금지법을 분석할 것이 요구될 것이며 당해 법규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어떠한 특정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국가의 법률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의 법체계 내에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가를 해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한 국가의 고유한 主權領域을 침범하는 실질적 위협의 부담이 있으며²⁵⁾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가치를 다른 국가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Ⅲ. 역외적용 법제와 국내법제에 있어 가치판단

1. 행위의 합법성 판단

궁극적으로 기업윤리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상에 있는 많은 영역은 법률에 의하여 合法과 不法의 判斷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법률은 혼합적이고 모

25) 어떠한 행위가 합법성의 방어에 의하여 면제되는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한 행위지 국가의 법률내용을 파악하여야 하고 언어의 뉘앙스를 해석하여야 하며 관련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번역을 하여야 한다. 행위지국가의 법률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teven R. Salbu, *supra note 16*, pp. 426~429 참조.

호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행위를 분류하는 것이 그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때 수용가능한 행위와 수용할 수 없는 행위를 구별하는 선은 근거가 부실할 수도 있고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한 결과를 포함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상충하는 다양한 이해 속에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로써 받아들이고 있다.²⁶⁾ 현실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 모두 빈번하게 허용 가능한 賄物과 허용할 수 없는 賂物사이의 구분을 위한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다. 하지만 상대적인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국내적으로 수용되어온 이러한 자의적인 기준의 설정을 문화적 이질성을 조건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역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률의 적용대상이 확고한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인 행위와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법률의 규정은 쉽게 수긍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신념의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타국에 대하여 자국의 자의적인 법규범을 적용하는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설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대상에게 당해 법규범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 내에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도 마치 외국인과 내국인의 거리만큼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共同의 價値와 規範意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의 가치와 규범의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보다 문화적으로 더욱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가치와 규범이 존재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사실 한 국가에서 살다보면 공동의 역사 경험,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공동의 논의, 상시적인 접촉과 교류, 인종적 단일성이나 인종적 교류, 종교적 단일성이나 종교적 교류 등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공동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규범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상의 교류와 공동경험을 떠나서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한 이에 따라 추정되는 공동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동의라는 公約數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독특한 힘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인정하는 문화적 상대주의는²⁷⁾ 이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민

26) *Ibid.*, pp. 430~431.

27) 최철영, “國際人權法과 文化的 相對主義,” 『인천대 행정대학원논총』 제1집, 1997, 13면.

주성을 담보하고 인류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이다.²⁸⁾

2. 합법성 판단의 사례

실제에 있어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구체적인 뇌물수수에 적용되는 경우 국내적으로는 허용되는 뇌물과 허용되지 않는 뇌물에 관한 구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적 현실에서 어떤 관급공사의 사업자가 관련관청의 담당자 자녀의 결혼식에 일정액의 축의금을 전달하는 경우에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이 축의금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우리 사회에서의 文化的 共感帶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법관이 이에 대한 法的 判斷을 하는 경우에 이는 심증판구 법률과 도덕 사이의 경계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법규범이 규율하고 있는 생활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은 불가피하게 문제영역에 남게된다. 문화적 모호성의 범주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촌지, 성의, 선물과 관련된 업계의 관행에 대한 분류 등급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역외에도 행사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법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잠재적 지뢰밭이 될 것이다.

法的 規範과 倫理的 理想 사이의 합리적 융화는 결국 자의적인 경계선을 그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받은 선물 중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여기에서 미화 100달러 이상과 국내시가 10만원이라는 기준은 도덕규범과 공직자로서의 윤리상 수용 가능한 선물의 價額을 우리나라 입법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설정한 것이며 아무런 객관적 고려요인도 찾아 볼 수 없다.³⁰⁾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화100달러 또는 우리 돈 10만원 이하의 가치를 갖

28) 지역적 문화와 지역사회의 특별한 중요성을 지역우선주의(indigenization)라는 개념을 통하여 강조하기도 한다: Michael C. Davis, “Constitutionalism and Political Culture: The Debate Over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11, 1998, p. 138.

29)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 제28조.

30) 실제에 있어 미화99달러 상당의 선물은 뇌물성이 없고 101달러 상당의 선물은 뇌물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신고기준을 설정한 立法政策決定者에게 있어 100달러라는 기준은 자의적인 것이며 그들의 경제적 경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는 선물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선물이든 뇌물이든 합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허용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이한 합리적 판단의 요구가 상이한 기업과 상이한 정부에 의하여 제기된다면 한 국가의 결정을 다른 국가에게 부과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위협스러운 것이다.

3. 국내적 입법을 통한 부패방지의 효율성

역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에 대한 역외 당사국의 거부감은 명백하다. 영향력과 통제의 역외적 행사는 국가간의 긴장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³¹⁾ 그러나 부패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또한 분명하다. 역외에 적용되는 법제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을 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만연하는 부패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공정하고 능률적인 경제발전이 매우 중요한 국가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질서를 파괴한다.³²⁾ 하지만 다국적인 영향력을 갖는 대외부패방지법 형태의 법제가 이러한 不法行爲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압력수단들은 현대의 정보집약적인 사회에 있어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제고는 국제사회에서 부패문제를 숨기거나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빠른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적 또는 國內的 處罰의 강력한 동기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역외에 적용되는 대외부패방지법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제는 뇌물수수에 대하여 타국에 대한 불필요하게 강력하고 간섭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자발적인 국내법을 통한 부패방지의 우월성과 역외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제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는 뇌물과 부패행위가 전면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자본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러시아의 시장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격변속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혼란은 기업인들로 하여

31) Penny Zagalis, Recent Decision, "Hartford Fire Insurance v. California : Reassessing the Application of the McCarran-Ferguson Ac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7, 1994, p. 267.

32) Steven R. Salbu, "Bribery in the Global Market : A Critical Analysis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Washington & Lee Law Review*, Vol. 54, 1997, pp. 252~253.

금 어떤 행위가 기업 윤리적 행위인가에 대하여 모호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도덕적인 문제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가 러시아의 成文法에 의해서는 금지되지 않지만 미국법에 따르면 뇌물의 공여가 되는 경우 당해 행위에 대하여 미국인은 책임을 부담하는가의 문제 즉 국제법상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문제와 관련된다.³³⁾

이러한 접근의 상대적 미묘성은 역외적용 법제의 약점을 암시하거나 뇌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통일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의 自律性和 主權을 존중하는 것이 부패의 방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³⁴⁾

IV. 국내적 부패방지법제의 국제적 조화

역외적용법제가 아닌 자발적 국내법을 이용하여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갖는 중요한 장점으로는 첫째, 세계 각국에 대하여 효과적인 국내법제를 제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외국에 적용하는데 대한 민족중심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며 두 번째, 국내법제에 의한 부패행위의 방지는 역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제에 의한 방법보다 국제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1.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국내적 부패방지법

(1) 국제기구의 노력

점차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부패행위의 부정적 경제적 기능을³⁵⁾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공감하고 있다. 즉 지난 수년 동안 지역주의적 차원에서

33) 이는 국제법상 체류국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보호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러시아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자국민표준주의(standard of national treatments) 또는 평등주의(principle of equality)의 결과이며 미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최소기준주의(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의 결론이다: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98, pp. 526~531; Louis Henkin, et. al., *International Law*, 1993, pp. 679~683 참조.

34) Steven M. Salbu, *supra note 16*, pp. 436~437.

35) 아시아개발은행(ADB)발표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정부기능을 평가한 결과 약 30%의 공공투자가 사기와 부정부패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1년 2월 13일자, 32면.

태평양지역경제협의회(PBEC), 미주기구(OAS),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국제지역기구가 부패의 방지를 적극 지지해 왔다. 비교적 약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의 마련에 나선 PBEC는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기준에 관한 성명”을³⁶⁾ 1997년 채택하여 회원기업들에게 윤리규범의 엄격한 준종을 요구하였다. 1996년에는 OAS의 회원국들이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을 自國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法制化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하는 미주부패방지협약을³⁷⁾ 체결하였으며 1998년 3월 현재 23개국이 서명하였다. 유럽연합은 1996년 「유럽연합의 재정적이익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제1의 정서, 1997년 제2의 정서, 「유럽연합직원및회원국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1998년 여름에는 29개국의 OECD 회원국들과 그 외 5개국들이³⁸⁾ 뇌물의 역외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의 입법을 요구하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에 관한 협약」을³⁹⁾ 서명하였으며 2001년 3월 현재 26개국이 비준하였다.⁴⁰⁾

미주국가기구(OAS)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미국의 대외부패금지법 유형의 법제에 의한 역외적 적용보다는 主權과 自律性을 적절히 존중하는 적극적인 국내적 부패방지법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 및 그와 유사한 법제보다는 國內法制에 의한 부패방지를 추진하고 있다.⁴¹⁾

국제연합(UN)은 1996년 「공무원의 국제적 행위규범 및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와 뇌물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을⁴²⁾ 총회에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36) 이 성명문은 PBEC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bcd.org/policy/1997/transpar.html> (as of 2001.6.11)에 게시되어 있다.

37)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Mar. 29, 1996, *I.L.M.* Vol. 35, p. 724.

38)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39)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37, 1998, p. 1: 이 협약에 의해 대표되는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화노력을 소위 “반부패라운드”라고 한다. 이러한 반 부패라운드는 뇌물행위의 비윤리성보다는 “공정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40)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19일 조약 제1472호로 비준하였다.

41) 각국의 국내법에 의한 부패방지제도는 자국 領土高權에 근거하여 자국 관할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간섭적이다.

42) G.A. Res. 51/59, U.N. GAOR 51st Sess., 82d mtg., Agenda Item 101, U.N. Doc. A/Res/51/59(1996).

「국제상거래에서의공무원의부패방지에관한조약」을 전 회원국과 비가입 5개 회원국이 채택하였다.

최근 많은 국가들 사이에 행정적 또는 입법적 제도를 통한 부패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⁴³⁾ 우리나라도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⁴⁴⁾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현행 법제로서 「공직자윤리법」, 「형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⁴⁵⁾ 등을 통하여 부패의 방지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국내입법을 하고 있다. 이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국내적 및 국제적 행위주체간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서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동 이해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역외적 입법과 국내적 입법 모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합은 국제기구에 의한 확실적인 부패방지활동이 국제사회에서 부패를 일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주권 및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모두 유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한편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의 가치에 대한 확산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相互對話와 協力の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충작용을 위한 노력이 부패의 방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2) 국내적 부패방지법제의 입법근거

역외적용 법제를 통하여 한 국가의 도덕기준을 외국에 대하여 강제하려고 하는 충동은 善意 또는 건전한 사고에 근거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에⁴⁶⁾ 대한 반작용은 단일의 그리고 방어 가능한 도덕체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다른 도덕적 시각을 갖는 문화를 포용할 의무가 있다는 ‘도덕적 주관주의’ 또는 ‘대중적 상대주의’를

43) 1998년 4월 2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형사법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의 회의내용.

44) 국민의 관점에서 부패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대통령령제16547호 「반부패특별위원회규정」에 의해 1999년 9월 설치되었다.

45) 동법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에(조약 제1472호) 가입하면서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8호로 제정된 것이다.

46) 최철영, 앞의 논문, 15~16면.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⁴⁷⁾ 특히 사람의 행위에 있어 도덕적 명령이 문화적 경계와 차이를 초월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덕적 상대주의는 正義와 不義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화상호간의 선택의 차이를 존중한다.⁴⁸⁾ 이는 두 가지 요인을 조화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첫째, 모든 인류사회에 공통적인 문화적 측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의 문화적 다양성과 둘째, 일정한 도덕적 명령은 그 범위의 넓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문화를 초월한다는 측면을 조화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초월적인 도덕적 명령은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 요청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의무는 보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인류학적 견지에서 확인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사회적 구조에 의하여 방어될 수 있는 가치의 운영이라는 넓은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또 존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각국이 자국의 국내적 실정에 맞는 국내적 부패방지 입법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정보집약적인 현대세계에서 합리적 文化的 相異性을 존중하면서 부패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⁴⁹⁾

2. 국제적 분쟁의 회피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외국법제의 역외적 적용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물리적 침략에 의해 발생하는 동일한 종류의 국제적 적대행위에 저항하고 충돌해왔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세계경제체제 전환노력은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非西歐 國家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대체방안은 미국의 경험 또는 서유럽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것이었다. 미국은 서방국가와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 국가의 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의

47) Richard Posner, "The Problematics of Moral and Legal Theory," *Harvard Law Review*, Vol. 111, 1998, pp. 1642~1643.

48) Ann Elizabeth Mayer, "Universal Versus Islamic Human Rights: A Clash of Cultures or a Clash With a Construc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1994, p. 383.

49) Steven M. Salbu,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99, p. 440.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방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세계 각국이 부패문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과 둘째, 올바른 방식은 미국의 방식이며 미국의 방식이란 미국 내에서 미국인이 하는 방식이라는 사상을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다.

물리적 침략과 팽창주의가 國際的 調和를 위협한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점증하는 반감은 유럽이나 아랍국가 또는 군사적 문제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식의 자본주의로 자국의 사회를 변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경제적 침략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미국이 자신의 재정적 제국주의 또는 경제적 식민지주의를 이식하려고 시도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표출되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제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반감을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는⁵⁰⁾ 점은 인정된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앞장선 것이 미국법의 역외적용 법제들이며 그 시초는 1980년대의 미국 獨占禁止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반감은 미국의 문화에 의하여 자신의 문화가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도달하였을 때 극대화된다. 유럽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편치 않은 심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역외적용 요건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캐나다 국민이나 기업을 고립시키려는데 대하여 방어적 조치들을 제도화하였다. 역외적용되는 미국법제에 대한 반감은 적대감을 유발하며 잠재적으로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위협한다.⁵¹⁾ 그리고 이 적대감은 국제관계에 해악을 유발하며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역외에 적용되는 법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危害의 정도는 다양하며 예측하기 힘들다. 역외적 법제가 미칠 수 있는 危害에는 대외투자의 포기, 기업인수합병의 장애, 대외관계에 대한 타격 등을 들 수 있다. 역외적용법제의 엄격한 적용은 미국이 국제적 비난과 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역외

50) *Ibid.*, p. 442.

51) Penny Zagalis, "Hartford Fire Insurance v. California: Reassessing the Application of the McCarran-Ferguson Ac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7, 1994, p. 267.

적 반부패법제의 이념적 침략성과 다국적 효력에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대외부패방지법의 다국적 효력은 미국의 법적,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인식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둘째, 각국의 국내법과 국내법의 이행이 상호 접근한다고 해서 거대한 국제적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 대외부패방지법의 다국적 성격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自國法을 역외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점에서 國際法에서는 미국법의 역외적용의 합법성여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⁵²⁾

미국 부패방지법의 다국적 성격은 미국에 대한 비난을 무력화시키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잠재적 불화와 마찰을 극적으로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외적 법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접근방법에 있어 확실성이 초국경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현재의 다자적 차원의 협력에 궁극적으로 동의할 것인가와는 관계없이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타방 국가의 시도는 항상 불화와 분노 그리고 충돌의 위험을 노정하게 될 것이다.⁵³⁾ 따라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역외적 부패방지법제를 입법한다면 그 결과는 국제관계에 있어 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에 대한 핵심적 의문은 미국영역 외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행위가 당해 국가의 法과 司法制度가 아니라 미국의 법원에서 미국법에 의한 판단에 의해 확인되고 분석되고 평가되어는 것이 옳은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국의 가치가 올바른 기준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가주권과 자율성을 침범하여 자국의 가치를 다른 국가에 시행하려고 하는 역외적용법제의 강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52) Steven M. Salbu, *op. cit.*, p. 444.

53) *Ibid.*, p. 445.

4. 국내법제를 통한 국제적 부패문제의 통제가능성

역외적용법제의 위압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부패가 해소될 수 있다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평화적 외교 및 대화의 힘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한 것이다. 즉 부패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規範力을 확보할 수 있는 國內法制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다. 부패가 국제적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역외적용되는 법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도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약화시킨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공격적인 기구간 거래에 있어서 신뢰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목표로 부패방지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지역적인 제도의 도입은 부패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에 있어 부패관행이 아시아지역에 있어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부패의 반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개혁의 충분한 촉진제가 되었다.

특정행위에 대한 수용가능성에 관한 문화적 판단에 있어 중간영역은 앞으로도 한 동안 존속할 것이며 부패행위와 관련한 광범위한 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 또한 촉진될 것이다. 아직까지 역외적 법령에 의한 부패의 國際的 規律은 불필요하게 강력하며 國際法上 干涉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다. 이로 인한 각 국간의 정서적 대립은 국제적 조화를 파괴하는 것이며 비교적 덜 침략적인 조건으로 쉽게 포용되어 질 수 있는 국내적 부패방지법제의 입법조차도 어렵게 하는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세계 각 국의 문화는 외부적으로 부과된 법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다양한 異質性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상 각 국은 자국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구속되겠다고 동의하고 서명을 한 條約과 국제관습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 원칙에만⁵⁴⁾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54) ICJ 규정 제38조 제1항.

국내법은 타방 주권국가의 동의 없이는 당해 국가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부패금지법과 같은 유형의 역외적용 법률은 동 법률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내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역외적용법령은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국가에게 최소한 모욕적이거나 국가주권을 무시하는 법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⁵⁵⁾

따라서 미국의 대외부패금지법은 그 적용을 받는 외국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규율하는 자국의 주권에 대한 法文化的 侵略으로 인식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권국가들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법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조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敵意를 가지고 반발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역외적용법제는 관련 국가 간에 제기된 다른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론 통상의 단절, 심지어는 군사적 대결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역외에 적용되는 국내법제는 문화적인 제국주의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法的 帝國主義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된다. 역외적용 법제는 국제관계에 있어 긴장과 불안을 형성하여 세계 각 국간의 동화 및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의 국제적 규범과 기준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지도 못할 것이다. 더욱이 역외적용법제는 국제적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는 뇌물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개념영역에 대하여 하나의 도덕성기준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도리어 역외적용 법령을 통하여 상호간 악감정과 보복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⁵⁶⁾ 이는 궁극적으로 부패라는 문화적 개념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통일된 법적 틀을 만들려는 노력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부패의 방지를 위한 국내적 법제와 역외적용 법제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검토는 실질적 부패방지의 가능성판단이라는 합리적 타협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55) 이러한 주장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보다 미국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음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다: Steven R. Salbu,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99, p. 425.

56) Philip M. Nicholas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뇌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제적 조화를 위협한다는 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뇌물에 대한 역외적용법제에 대한 반발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한 조화적 국제법이론 보다는 신현실주의적 국제법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Philip M. Nicholas, *supra note 3*, p. 476.